한·몽골 경제동반자협정(EPA) 추진 대비 농축산물 교역 및 농업 협력 분석

이상현 안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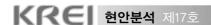


1.	한·몽골 경제동반자협정(EPA) 추진과 몽골의 농업구조 ·······1
2.	몽골의 농축산물 교역 동향
3.	우리나라의 對몽골 농축산물 교역 동향 8
4.	농업 협력 현황10
5.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감수한석호연구위원061-820-2279shohan@krei.re.kr내용문의이상현부연구위원061-820-2037shlee@krei.re.kr자료문의성진석선임전문원061-820-2212jssaint@krei.re.kr

- 「KREI 현안분석」은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OP



- 7월 17일 몽골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차히야 엘벡도르지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 몽골 경제동반자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PA) 추진을 위한 공동연구 개시에 합의
 - 이번 합의에 따라 EPA 공동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세부 연구범위, 기간, 연구진 구성 등의 사항에 대한 협의를 올해 중 마무리하고 빠르면 올해 말 또는 내년 초부터 공동연구를 시작할 계획
 - 보유자원, 지정학적 위치 등의 요인으로 몽골과의 협력강화는 전략적 가치가 큼. 향후 몽골과의 경제 협력 확대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몽골에는 반 유목 방식의 축산업이 전체 농업 생산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생산되는 농축산물은 양고기, 쇠고기 등의 육류임
 - 육류에 이어 유제품이 많이 생산되고 있으며, 상위 생산품목으로 우유, 염소유, 양유, 낙타유 등을 포함하고 있음, 몽골에서 주로 생산되는 작물은 주로 곡물류로 밀과 감자이고, 그 외에도 귀리, 보리 등이 생산되고 있음
 - 몽골은 기타 초콜릿 제품. 기타 조제식료품. 담배. 페이스트리. 설탕과자 등의 가공식품을 주로 수입하고 세모(Hair, fine), 말고기, 양모(탈지) 등의 축산물과 기타 동식물 원료(Crude material), 기타 초콜릿 제품 등을 주로 수출하고 있음
- 몽골의 주요 농축산물 수출 품목은 축산물인 반면, 우리나라의 주요 對몽골 수입 품목은 탕과자. 음료수. 차. 페이스트리 등 가공식품이고. 우리나라의 對몽골 수출 품목은 기타 조제 식료품, 담배, 페이스트리, 기타 과일(조제품), 대두유, 기타 초콜릿 제품 등을 수출하고 있으나 양국의 수출입 규모는 크지 않음
- 축산물위생 관리 및 고병원성 질병관리 방안. 가축 및 생명공학 분야 공동연구 등 주로 축산업에 국한되어 있던 2003년 농업분야 협력 양해각서를 이번에 농업 및 농촌 정책에 관한 정보교류에서부터 농업의 민간투자 촉진까지 포함시켜 재서명함.
- 한·몽골 경제동반자협정 추진으로 우리나라가 중앙아시아와 유라시아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이번에 포함된 농업개발 협력 분야에도 러시아의 수의표준 공동개발. 중국의 유기농 식품 표준 및 인증시스템 구축, 제도 교육 지원과 같이 양국의 농축산물 교역을 촉진시키기 위해 식품 품질 및 안전기준을 공동으로 설정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음

한 몽골 경제동반자협정 추진을 위한 공동연구 개시에 합의

1. 한·몽골 경제동반자협정(EPA) 추진과 몽골의 농업구조

1.1. 한·몽골 경제동반자협정(EPA) 추진

- □ 7월 17일 몽골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차히야 엘벡도르지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 을 갖고 한·몽골 경제동반자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추진을 위한 공동연구 개시에 합의함.
 - 그간 몽골은 일본과의 EPA에 대한 몽골 내 부정적 여론 등을 들어 우리와의 FTA 협의 에 소극적 입장이었으나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몽골 EPA 공동연구를 개시키로 합의함
 - 이번 합의에 따라 EPA 공동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세부 연구범위. 기간. 연구진 구성 등의 사항에 대한 협의를 올해 중 마무리하고 빠르면 올해 말 또는 내년 초부터 공동연 구를 시작할 계획임.
- □ 중국과 러시아는 최근 중국 주도의 신 실크로드 정책을 중심으로 중·몽·러 3국 간 협력을 가속화해 나가고 있으며, 일본은 2015년 몽골과 최초로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체결함. 유라시아경제연합(EEU)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도 몽골과의 FTA를 검토 중임.
 - 보유자원, 지정학적 위치 등의 요인으로 몽골과의 협력강화는 전략적 가치가 큼. 향후 몽골과의 경제 협력 확대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양국이 보유한 잠재력에 비해 그동안 한·몽골 협력관계는 상대적으로 미흡하였음. 양 국 정부 간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유망 협력 분야에 대한 상호 체계적인 경제 협력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전체 국토 면적은 우리나라의 7.4배, 농지면적 비중은 국토면적의 약 73%

1.2. 몽골의 농업현황

□ 몽골은 중앙아시아 북쪽에 위치한 내륙국가로 러시아 및 중국과 접경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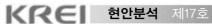
- 전체 국토 면적은 우리나라의 7.4배로 서유럽과 비슷한 크기이며, 농지면적 비중은 국 토면적의 약 73%를 차지하고 있음.
 - 국토면적의 대부분은 농지와 목축지로 이루어져 있고, 그 외에도 산림(9.6%), 강, 호수 (1%)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몽골의 지역은 산림초원지대, 산악지대, 반사막지대, 사막지대로 구분됨.
- □ 2014년 기준 몽골의 총인구는 291만 명이며, 이 중 농촌인구는 84만 명으로 전체 인 구의 28.8%를 차지하고 있음.
 - 몽골의 총인구는 우리나라의 5.6% 수준으로 매우 적으나. 농촌인구 비중은 우리나라 (17.6%) 대비 높은 편임.
- □ 2014년 기준 몽골의 총 GDP는 120억 달러로 세계 124위이며, 1인당 GDP는 4천 달러 로 2000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다 2014년 소폭 하락함.
 - 농업 GDP는 2000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2014년 기준 총 GDP의 15.8%를 차지하고 있음.

표 1. 몽골 농업현황

	단위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국토면적	천 km²	1553.6	1553.6	1553.6	1553.6	1553.6	1553.6	1553.6
농지면적	천 km²	1304.7	1134.5	1135.9	1135.1	1134.0	1133.1	-
농지면적 비중	%	84.0	73.0	73.1	73.1	73.0	72.9	_
총인구	천 명	2397.4	2526.4	2712.7	2759.1	2808.3	2859.2	2909.9
농촌인구	천 명	1027.7	947.6	879.8	868.1	857.3	847.3	837.4
농촌인구 비중	%	42.9	37.5	32.4	31.5	30.5	29.6	28.8
총 GDP	십억 달러	1.1	0.3	7.2	10.4	12.3	12.5	12.0
1인당 GDP	천 달러	0.5	1.0	2.7	3.8	4.4	4.4	4.1
농업 GDP	십억 달러	0.3	0.5	0.8	1.1	1.4	1.7	1.7
농업 GDP 비중	%	30.9	22.1	13.1	11.8	12.7	15.4	15.8

주: World Bank에서 몽골의 경지면적이 제공되지 않음.

자료: World Bank Data



몽골의 주요 생산 품목은 양고기, 쇠고기, 우유 등 축산업에 집중되어 있음

1.3. 몽골의 농축산물 생산현황

- □ 몽골의 농축산물 생산액은 2000년 2억 2.800만 달러였으나. 2013년에는 9억 6.860만 달러로 약 4.2배 증가하였음.
- □ 몽골에는 반 유목 방식의 축산업이 전체 농업 생산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생산되는 농축산물은 양고기, 쇠고기 등의 육류임,
 - 2011~2013년 평균을 기준으로 양고기와 쇠고기는 각각 전체 농축산물 생산액의 21.8%와 21.2%를 차지하고 있음.
 - 양고기 생산액은 2012년에 큰 폭으로 감소했다가 다시 회복되는 추세이고, 쇠고기 생산액 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2013년을 기준으로 양고기와 쇠고기의 생산액은 각각 2억 4.680만 달러와 2억 5.220만 달 러임, 쇠고기 생산액의 경우 우리나라 생산액의 5.9%에 불과하지만, 양고기 생산액의 경 우 우리나라 생산액의 503.7배에 달하는 생산규모를 갖고 있음.
- □ 육류에 이어 유제품이 많이 생산되고 있으며, 상위 생산품목으로 우유, 염소유, 양유, 낙타유 등을 포함하고 있음. 몽골에서 주로 생산되는 작물은 밀과 감자이고. 그 외에 도 귀리. 보리 등이 생산되고 있음.
 - 2011~2013년 평균을 기준으로 우유. 염소유. 양유. 낙타유는 각각 전체 농축산물 생 산액의 15.4%, 7.2%, 3.5%, 0.9%를 차지하고 있음.
 - 우유 생산액은 2011년에 최대치까지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추세이고. 염소 우유와 낙타우유 생산액은 2013년에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며, 양유 생산액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 2013년을 기준으로 우유 생산액은 9.190만 달러로, 우리나라 생산액의 5.6%에 불과함.
 - 2011~2013년 평균을 기준으로 밀과 감자는 각각 전체 농축산물 생산액의 12.2%와 11.2%를 차지하고 있음.
 - 밀과 감자 생산액은 각각 2011년과 2012년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가 감소함.

- □ 몽골에서 주로 생산되는 채소류는 당근과 순무, 양배추류, 오이류, 양파(건조) 등임. 그 외에도 양모(그리지), 계란, 천연 꿀 등이 생산되고 있으나, 전체 농축산물 생산액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수준임.
 - 2011~2013년 평균을 기준으로 당근과 순무, 양배추류는 각각 전체 농축산물 생산액 의 2.3%와 1.6%를 차지하고 있음.
 - 당근과 순무 생산액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고, 양배추류는 2012년까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추세임.

표 2. 몽골의 주요 농축산물 생산 품목

단위: 백만 달러

품목	2000년	2005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1~13년 평균
총 생산액	228.0	259.2	925.0	1,232.6	968.2	968.6	1,056.5
양고기	62.1	67.5	223.5	299.5	145.1	246.8	230.5
쇠고기	52.2	41.0	120.9	170.6	248.6	252.2	223.8
^	55.8	63.5	247.1	292.8	104.0	91.9	162.9
밀	13.2	9.9	126.5	163.5	132.5	92.2	129.4
감자	17.7	30.9	89.7	126.2	142.3	86.1	118.2
염소유	7.2	14.8	39.6	72.4	77.9	77.1	75.8
양유	4.7	6.9	23.9	34.2	37.9	38.6	36.9
당근과 순무	2.2	4.9	14.7	22.5	26.1	25.8	24.8
양배추류	5.4	8.0	12.7	16.6	17.0	16.5	16.7
낙타유	0.3	1.7	6.5	8.4	10.7	9.4	9.5
오이류	2.5	3.7	6.3	9.7	8.7	9.4	9.3
양파(건조)	0.7	2.1	5.1	6.0	5.8	10.3	7.4
양모(그리지)	3.0	3.3	4.3	5.7	6.0	6.0	5.9
귀리	0.1	0.1	1.7	1.3	2.3	3.7	2.4
보리	0.2	0.2	1.6	1.7	2.0	1.5	1.7
 계란	0.6	0.9	0.9	1.0	0.9	0.6	0.8
천연꿀	0.1	0.1	0.2	0.5	0.5	0.6	0.5

주: 명목가격(Current US \$) 기준임.

자료: FAOSTAT.

몽골의 농축산물 수입은 2000년 대비 5.6배 증가, 주요 수입 품목은 기타 초콜릿 제품 등의 가공식품

2. 몽골의 농축산물 교역 동향

2.1. 몽골의 농축산물 수입 동향

- □ 몽골의 농축산물 수입은 2000년 약 9.660만 달러였으나. 2013년 5억 4.110만 달러로 약 5.6배 증가하였음.
- □ 몽골은 기타 초콜릿 제품, 기타 조제식료품, 담배, 페이스트리, 설탕과자 등의 가공식 품을 주로 수입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기타 초콜릿 제품과 기타 조제식료품 등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음.
 - 기타 초콜릿 제품. 기타 조제식료품, 페이스트리, 설탕과자의 수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1~2013년 평균을 기준으로 각각 전체 농축산물 수입의 13.7%, 13.4%, 5.5%. 5.0%를 차지하고 있음.
 - 담배는 2010년 이후 수입이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3년에 전년 대비 수입이 소폭 감소하 였으며, 2011~2013년 평균을 기준으로 전체 농축산물 수입의 9.6%를 차지하고 있음.
- □ 음료수. 맥주. 커피(추출물) 등의 품목도 상위권에 속하며. 커피(추출물)를 제외하고 수입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 음료수와 맥주는 2011~2013년 평균을 기준으로 각각 전체 농축산물 수입의 4.3%와 3.4%를 차지하고 있음.
 - 커피(추출물)는 2011~2013년 평균을 기준으로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2년 이후 로 수입이 감소하는 추세임.
- □ 신선 농산물 중 밀가루 수입은 감소하고 있고. 기타 과일(조제품)과 맥아는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이며, 낙농품 중 계란과 닭고기 수입은 최근 급증하는 추세임.
 - 밀가루, 기타과일(조제품), 맥아는 2011~2013년 평균을 기준으로 각각 전체 농축산물 수입의 3.8%, 2.2%, 1.6%를 차지하고 있음.
 - 계란과 닭고기는 각각 전체 농축산물 수입의 2.0%를 차지하고 있음.

- □ 유지류 중 해바라기유, 대두유, 마가린(쇼트닝)을 주로 수입하고 있고, 대두유를 제외하고 모두 감소하는 추세임.
 - 해바라기유, 대두유, 마가린(쇼트닝)은 2011~2013년 평균을 기준으로 각각 전체 농축 산물 수입의 1.9%, 1.5%, 1.5%를 차지하고 있음.

표 3. 몽골의 주요 농축산물 수입 품목

단위: 백만 달러

품목	2000년	2005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1~13년 평균
총수입	96.6	147.4	326.9	447.7	512.1	541.1	500.3
기타 초콜릿 제품	2.5	9.6	37.9	63.5	68.3	73.7	68.5
기타 조제 식료품	3.3	9.1	44.0	60.8	64.6	76.3	67.2
담배	9.2	8.6	26.6	40.6	57.7	45.9	48.1
페이스트리	2.8	5.0	19.4	29.8	22.3	29.7	27.3
설탕과자	3.6	10.6	18.4	23.6	25.5	26.7	25.3
음료수	2.4	1.8	11.2	17.9	24.4	22.7	21.7
밀가루	16.9	20.0	12.8	28.0	17.4	11.2	18.9
맥주	9.4	4.5	10.5	12.3	18.2	20.0	16.8
원당(원심분리전)	5.1	7.1	10.0	11.6	11.9	11.7	11.7
기타 과일(조제품)	0.6	1.5	6.5	8.7	12.4	12.5	11.2
계란	0.4	0.6	5.1	8.2	10.1	12.3	10.2
닭고기	0.0	0.4	5.4	5.5	9.1	15.8	10.1
해바라기유	0.5	0.2	12.0	9.5	9.2	9.7	9.5
아이스크림 및 식용얼음	0.5	1.1	4.2	6.1	8.8	9.9	8.3
맥아	0.1	1.1	4.6	5.9	7.5	10.4	7.9
대두유	0.7	7.4	5.7	5.8	7.9	9.5	7.7
마가린(쇼트닝)	1.3	3.6	6.4	7.3	8.0	7.0	7.4
커피(추출물)	0.3	0.5	5.9	8.1	7.0	6.6	7.2
증류주	0.1	0.5	4.4	6.8	7.7	6.4	7.0
웨이퍼	0.0	2.1	0.5	0.6	11.0	7.5	6.4

주: 명목가격(Current US \$) 기준임.

자료: FAOSTAT.

몽골의 주요 수출 품목은 축산물과 기타 초콜릿 제품

2.2. 몽골의 농축산물 수출 동향

- □ 몽골의 농축산물 수출은 2000년 약 8.490만 달러였으나. 2013년 1억 5.620만 달러로 약 1.8배 증가하였음.
- □ 몽골은 세모(Hair, fine), 말고기, 양모(탈지) 등의 축산물과 기타 동식물성 원료 (Crude material), 기타 초콜릿 제품 등을 주로 수출하고 있음, 식량작물 및 유지류 중 유채, 기타 견과류, 밀, 감자 등의 수출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수출이 증가하는 추세임.
 - 세모, 말고기, 양모(탈지)는 2011~2013년 평균을 기준으로 각각 전체 농축산물 수출 의 49.7%. 4.8%. 4.3%를 차지하고 있음.
 - 기타 동식물 원료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2011~2013년 평균을 기준으로 전 체 농축산물 수출의 10.6%를 차지하고 있음.
 - 기타 초콜릿 제품은 2011~2013년 평균을 기준으로 전체 농축산물 수출의 19.3%를 차지하고 있음.
 - 유채와 기타 견과류는 2011~2013년 평균을 기준으로 각각 전체 농축산물 수출의 3.0%와 2.5%를 차지하고 있음.

표 4. 몽골의 주요 농축산물 수출 품목

단위: 백만 달러

품목	2000년	2005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1~13년 평균
	84.9	45.9	99.5	118.5	129.6	156.2	134.8
세모	23.7	17.4	39.4	48.9	64.7	87.5	67.0
기타 초콜릿 제품	0.0	0.0	12.0	24.0	28.0	26.0	26.0
기타 동식물 원료	6.0	7.3	7.3	11.3	13.1	18.3	14.2
말고기	0.0	4.8	19.6	11.7	4.1	3.4	6.4
양모(탈지)	0.9	5.5	6.8	7.7	7.1	2.8	5.8
유채	0.0	0.1	0.2	3.7	2.6	6.0	4.1
기타 견과류	0.2	0.5	0.7	2.9	3.7	3.7	3.4
원피(소, 습염)	13.7	4.2	3.4	3.1	2.7	2.8	2.8
쇠고기	15.2	3.1	6.9	4.6	2.9	0.1	2.5
밀	0.0	0.0	0.0	0.0	0.0	3.3	1.1
주류(증류)	0.9	0.1	0.2	0.2	0.3	0.8	0.4
감자	0.0	0.0	0.0	0.0	0.0	1.0	0.3

주: 명목가격(Current US \$) 기준임

자료: FAOSTAT.

우리나라의 對몽골 수입은 2000년 대비 69.2% 감소, 주요 수입 품목은 설탕과자, 음료수 등 가공식품

3. 우리나라의 對몽골 농축산물 교역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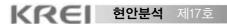
- 3.1. 우리나라의 對몽골 농축산물 수입 동향
- □ 우리나라의 對몽골 농축산물 수입은 2000년 약 124만 달러였으나, 2015년 185만 달러로 약 49,2% 증가하였음.
 - 우리나라는 몽골의 주요 농축산물 수출 품목인 축산물을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고, 그 외에도 가공식품을 수입하고 있음.
- □ 우리나라는 몽골에서 기타 양모, 섬수모, 조수모, 육즙, 녹용, 산양 및 면양원피 등 축산물과 검, 녹차 및 홍차, 기타 조제농산품, 보드카, 음료(한약재 기타) 등의 가공식품을 수입하고 있음.
 - 축산물의 수입은 증가 추세인 반면, 기타 조제농산품을 제외한 가공식품의 수입은 감소하고 있음. 2015년에는 유채가 수입되기 시작함.

표 5. 우리나라의 對몽골 주요 농축산물 수입 품목

단위: 첫 달러

										근귀 선 달니
품목	주요 세번	2000년	2005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3~15년 평균
총수입		1,238.8	536.9	469.3	670.4	3,414.9	1,476.7	1,489.3	1,847.3	1,604.4
모·수모류	기타 양모, 섬수모, 조수모 등	0.0	0.0	0.0	0.0	2012.4	608.8	835.2	923.3	789.1
기타육류	육즙	0.0	179.6	92.5	103.3	228.5	215.3	217.8	299.3	244.1
 한약재 (축산물)	녹8	918.9	65.3	61.6	0.0	0.0	0.0	132.0	203.0	111.7
원피류	산양, 면양원피	0.0	0.0	0.0	0.0	459.3	240.0	0.1	70.1	103.4
과자류	검	0.3	0.1	58.0	158.6	189.7	123.1	69.6	54.7	82.5
차류	녹차, 홍차	0.0	0.0	5.6	20.6	43.2	57.2	46.4	39.9	47.8
기타 조제 농신품	혼합조제식료품, 차 마태조제품	121.0	0.0	39.3	51.1	38.9	40.8	44.5	49.6	45.0
채유종실	유채	0.0	0.0	0.0	0.0	0.0	0.0	0.0	130.2	43.4
주류	보드카	0.0	36.5	101.5	101.4	83.1	40.1	29.1	28.7	32.6
음료	한약재 기타	0.0	0.0	5.0	0.0	0.2	0.1	78.5	10.1	29.6

자료: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www.kati.net).



우리나라의 對몽골 수출은 2000년 대비 6.3배 증가, 주요 수출 품목은 기타조제식료품, 음료수 등 가공식품

3.2. 우리나라의 對몽골 농축산물 수출 동향

- □ 우리나라의 對몽골 농축산물 수출은 2000년 약 560만 달러였으나. 2015년 3.500만 달러로 약 6.3배 증가하였음.
 - 우리나라는 초콜릿, 담배, 과자, 맥주, 대두유, 커피조제품 등을 수출하고 있으며, 해 당 품목들은 몽골의 농축산물 주요 수입 품목임.
- □ 우리나라는 몽골로 필터담배, 음료(기타 음료, 물), 라면, 맥주, 소오스(마요네즈, 혼합 조미료 등). 커피조제품 등 가공식품을 주로 수출하고 있으며, 과실류(감귤, 유자, 기 타 과실). 채소류(토마토, 딸기). 느타리버섯 등 신선 농산물 수출도 수출금액을 기준 으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음.

표 6. 우리나라의 對몽골 주요 농축산물 수출 품목

단위: 백만 달러

품목	주요 세번	2000년	2005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3~15년 평균
총수출		5.6	12.5	28.8	35.5	42.5	42.7	41.5	35.0	39.8
연초류	필터담배	0.1	3.4	3.9	4.8	6.0	6.3	9.7	9.2	8.4
<u>음료</u>	기타 음료, 물	0.1	0.3	2.0	3.8	4.6	4.6	5.0	4.5	4.7
면류	라면	0.3	1.2	2.4	3.6	4.3	4.5	4.1	2.6	3.7
주류	맥주	2.6	4.0	6.7	6.6	6.6	5.6	2.6	1.7	3.3
소오스류	마요네즈, 혼합조미료, 기타 소오스제품	0.9	1.2	2.1	2.9	3.5	2.6	3.0	3.2	3.0
과실류	감귤, 유자, 단일과실 조제품, 기타과실	0.4	0.5	1.9	2.5	3.1	3.9	2.7	1.5	2.7
커피류	커피조제품	0.1	0.5	2.7	2.4	2.5	1.8	1.4	2.1	1.8
과자류	비스킷, 기타 베이커리 제품	0.7	0.6	0.9	0.8	1.3	1.3	1.6	1.5	1.5
기타 조제	혼합조제식료품, 차, 마태조제품	0.0	0.0	0.8	1.8	1.7	1.8	1.1	0.9	1.3
코코이류	초콜릿	0.0	0.1	0.2	0.3	0.4	0.4	1.2	1.1	0.9
식물성 유지	대두유	0.1	0.0	0.7	0.7	0.6	0.5	0.8	0.3	0.5
채소류	토마토, 딸기	0.0	0.1	0.8	0.3	0.4	0.4	0.7	0.4	0.5
낙농품	우유조제품, 조제분유	0.1	0.3	1.0	1.2	1.0	0.7	0.5	0.3	0.5
버섯류	느타리버섯	0.0	0.0	0.0	0.0	0.1	0.3	0.3	0.4	0.3

자료: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www.kati.net).

우리나라와 몽골은 기술 협력, 유통체계 개선, 축산 분야 협력, 민간 투자 등에 대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함

4. 농업 협력 현황

4.1. 우리나라와 몽골의 농업 협력 현황

- □ 2003년 10월 27일 농업 분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음. 당시 체결된 약정의 내용 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양국은 2016년에 보다 포괄적으로 보완하여 재서명함.
 - 2003년에 체결된 약정의 내용은 축산물위생 관리 및 고병원성 질병관리 방안, 가축 및 생명공학 분야 공동연구 등 주로 축산업에 국한되어 있었음.
 - 2006년에 추가적으로 몽골 축산물 전문가 초청교육, 몽골 축산물 위생관리시스템 구축 공동연구, 전문가 파견에 대해 협의하였고, 2007년에는 농진청, 농협, 지자체 등을 통해 축산 기술지도 분야에 관하여 협의하였음.¹⁾
 - 2016년에 보완된 한·몽골 농업 및 식품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는 농업 및 농촌 정책에 관한 정보교류에서부터 농업의 민간투자 촉진까지 2003년에 체결된 약정에 비해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
 - 협력내용으로 농업 및 농촌 정책에 관한 정보교류,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한 기술 협력 및 전문가 교류,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농업 개발 협력, 관개배수 시스템 개발, 농업 기계화, 농산물 수확 후 관리 및 유통체계 개선에 관한 협력, 가축 관련 분야 협력, 식품가공 및 축산물 이력제 시스템 관련 협력, 민간·공공 부문 교류, 농업 민간투자 촉진 등이 있음.²⁾

표 7. 우리나라와 몽골의 농업 협력 현황

협약명	체결 주체 한국 측 상대 측		10 1 1		체결 시기	협력 내용
	안국 즉	상대 즉				
한 몽골 농업 협력 양해각서	농림부	식품 농업부	2003년 10월	축산물위생 관리 분야 공동연구질병 및 가축 관련 생명공학 분야 공동연구농업연수 프로그램 운영		
한 몽골 농업 및 식품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2003년 체결 내용 수정·보완)	농림축산 식품부	식품 농업부	2016년 7월	- 농업 및 농촌 정책에 관한 정보교류- 농업 기술 협력 및 전문가 교류-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농업 개발 협력 등		

자료: A. Battogtokh(2007), 농림축산식품부(2016).

²⁾ 농림축산식품부(2016),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와 몽골 식품농업부 간 농업 및 식품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¹⁾ Amarjargal Battogtokh(2007). "한국과 몽골의 자유무역협정(FTA)과 농업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순천대학교대학원.

몽골은 러시아, 중국, 일본과도 농업협력 시행 중

4.2. 타 국가와 몽골의 주요 농업 협력 현황

- □ 러시아와 몽골의 농업부는 2009년 양국 간 농업 분야의 다양한 사안에 대한 협력 협 정에 서명하였음. 주요 협정내용은 기술 협력, 비료와 종자 지원, 가축 안전장비 및 전 문가 교육 등임_.3)
 - 러시아의 농업장비 및 농업기술 지원 협력, 비료 및 종자 지원, 가축질병 안전장비 구 축, 러시아교육기관에서의 몽골 전문가 교육, 몽골의 육류제품 수출 활성화 등의 내용 을 포함하고 있음.
 - 특히 러시아 시장에서 쇠고기 부족을 겪고 있어 몽골로부터의 육류 수입 증대 효과를 위해 협정 내용 중 수의학 분야를 강조하며 몽골 내 러시아와 동등한 수준의 수의표준을 개발하 겠다고 표명함.
- □ 중국은 몽골의 식량안보 프로그램 협력을 위해 2010년부터 농업기술 지원뿐만 아니 라, 농업분야 투자로 농기계 구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유기농 식품표준과 인증 시스템 구축 및 제도 교육을 지원하고 있음.4)
- □ 몽골의 농업부와 일본의 홋카이도는 2015년 농업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함. 주요 내용 은 몽골의 기후와 비슷한 홋카이도 지역의 작물 재배 기술에 대한 연구임.5)

³⁾ 주 몽골 한국대사관(http://mng.mofat.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hbdlegationread.jsp? typeID=15&boardid=1623&seqno=671274&c=TITLE&t=&pagenum=1&tableName=TYPE LEGATION&pc=&dc =&wc=&lu=&vu=&iu=&du=).

⁴⁾ MDNews(http://www.mongoliaeconomy.com/china-mongolia-sign-agricultural-co-op-deal/).

⁵⁾ Voice of Mongolia(http://vom.mn/d/8567).

5. 시사점

- □ 한·몽골 경제동반자협정 추진으로 우리나라가 중앙아시아와 유라시아 진출을 위한 교 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몽골은 보유자원, 지정학적 위치 등의 측면에서 전략적 가치가 큰 국가임. 몽골과의 협력강화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실현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됨.
- □ 몽골의 농축산물 교역동향과 한·몽골 농축산물 교역동향을 살펴보면, 현재까지 양국의 교역규모는 크지 않음.
 - 몽골의 對세계 및 對한국 주요 수출품목들을 살펴보면, 수출이 일부 품목에 특화되어 있고 우리나라 농업과 직접 연계 정도가 약함.
 - 반면, 우리나라의 對몽골 수출품목들은 현재는 교역규모가 매우 미미하나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들로 향후 EPA 체결 시 수출증대가 예상됨.
 - 몽골의 시장이 크지 않아 향후 교역 분야보다는 농업 협력 분야에서 기대가 높음.
- □ 최근 우리나라는 몽골과의 농업 협력 양해각서 내용을 보완하였음. 기존 체결내용보다 다 다양한 범위에 걸친 협력 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하지만 타 국가와 마찬가지로 축산업 분야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농업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러시아의 수의표준 공동개발, 중국의 유기농 식품 표준 및 인증시스템 구축, 제도 교육 지원과 같이 양국의 농축산물 교역을 촉진시키기 위해 식품 품질 및 안전기준을 공동 으로 설정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양국의 수출 품목에 대한 식품 품질 및 안전기준을 개발하여, 수출 상품에 우리나라와 몽골의 공동인증마크를 표기하여 수출하는 방법을 도입한다면 교역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KREI 현안분석 제17호

한·몽골 경제동반자협정(EPA) 추진 대비 농축산물 교역 및 농업 협력 분석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2016. 8. 12.

발 행 인 김창길

편집위원 최지현, 우병준, 김수석, 김용렬, 한석호, 문한필

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http://www.krei.re.kr

인 쇄 (주)한디자인코퍼레이션

02-2269-9917 admin@han-d.co.kr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